

---

#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

---

2022. 2.

 **극악방송**

# || 목 차 ||

I. 인권영향평가 목적 .....	1
II. 인권영향평가 개요 .....	1
III. 인권영향평가 종류 .....	2
IV. 인권영향평가 결과(요약) .....	3
V. 인권영향평가 결과(세부) .....	5
VI. 인권영향평가 전문위원 평가 .....	8
VII. 행정사항 .....	10

(별첨1)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표

(별첨2)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표

# 2021년도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

'22.2.23(수) / 경영기획부

## I | 인권영향평가 목적

- 우리 기관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이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인권경영 발전 도모

## II | 인권영향평가 개요

- [평가근거] 인권경영 매뉴얼, 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
  -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매뉴얼
  - 「윤리인권경영 이행 지침」
- [평가기간] 2022.1.3(월) ~ 2022.2.22(화)
- [평가내용]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평가
- [평가방법] 서면평가
  - 인권경영 담당자 간담회 → 인권경영 담당부서(경영기획부) 체크리스트 1차 평가 → 외부위원(전문가) 2차 평가 →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
- [점수 및 평가등급 체계]

### 【 인권영향평가 개별지표 평가표 】

구 분	예	보완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*	해당 없음**
점 수	100%	50%	0%	평가 제외	
	분야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답변에 따라 비율로 점수 계산				

### 【 인권영향평가 항목별 평가표 】

구 분	가등급	나등급	다등급	라등급	마등급
평 점	100~90점	90점 미만~80점	80점 미만~70점	70점 미만~60점	60점 미만

- ※ 평가 불가능한 지표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
- \* (정보없음) 지표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정보가 없는 경우
- \*\* (해당없음) 우리기관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

### III | 인권영향평가 종류

#### 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- 경영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인권경영체계, 고용, 노동권, 산업안전, 공급망, 고객관리 등에 대한 평가
- (지표구성) 8개 분야, 23개 항목, 95개 지표(최초 계획 대비 일부 조정)

평가 분야	항목/지표	평가 분야	항목/지표
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5개 / 23개	산업안전 보장	4개 / 19개
고용상의 차별 금지	3개 / 14개	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2개 / 5개
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	1개 / 4개	정보 인권 보호	1개 / 5개
강제노동의 금지	3개 / 12개	직원 인권 보장	4개 / 13개

#### 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(콘텐츠 제작 관리)

- 특정 사업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평가
- (지표구성) 4개 분야, 13개 지표 (최초 계획 대비 일부 조정)

평가 분야	지표
외부인력 차별금지	5개
방송인권 보호	2개
재산권 보호	4개
사업고객 정보 보호	2개

## 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(방송심의)

- 특정 사업 대상으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평가
- (지표구성) 2개 분야, 6개 지표 (최초 계획 대비 일부 조정)

평가 분야	지표
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	3개
민원인 인권 존중	3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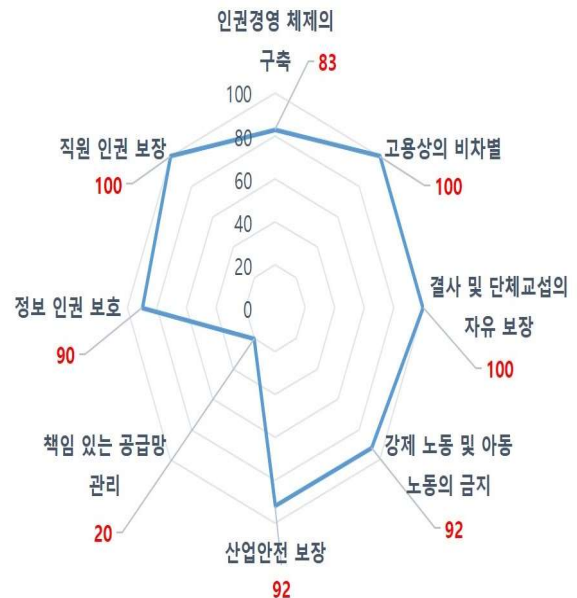
## IV

## 인권영향평가 결과(요약)

### 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는 85점으로 나등급으로 나타났으며, ‘책임있는 공급망 관리’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(2020년도 74점 다등급)

연번	분야	평점	등급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83점	나
2	고용상의 차별 금지	100점	가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	100점	가
4	강제노동의 금지	92점	가
5	산업안전 보장	92점	가
6	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20점	마
7	정보인권 보호	90점	가
8	직원 인권 보장	100점	가
-	평균 점수	85점	나



## 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(콘텐츠 제작 관리)

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는 83점으로 나등급으로 나타났으며, ‘외부인력 차별금지’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(2020년도 76점 다등급)



## 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(방송심의)

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는 83점으로 나등급으로 나타났으며, 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, 민원인 인권존중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 (2020년도 75점 다등급)



## 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##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(5개 항목, 23개 지표)

항 목	예	보완 필요	야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평점	등급
인권존중 정책선언	4개					100점	가
인권영향 평가 정기적 실시	3개	1개				88점	나
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	2개	1개	1개			63점	라
인권경영 성과	5개					100점	가
구제절차 마련	2개	4개				67점	라
<b>평균 점수</b>	<b>16개</b>	<b>6개</b>	<b>1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83점</b>	<b>나</b>

○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인권 현안 도출 및 정책 반영 등 필요  
 ○ 정기적인 인권영향평가 시행으로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,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, 집단과의 협의 과정 필요  
 ○ 이해관계자 등 모든 국민에게 인권영향평가 관련 정보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  
 ○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지침 수립으로 향후 인권침해 피해자 발생 시 대응 가능

## ② 고용상의 차별 금지(3개 항목, 14개 지표)

항 목	예	보완 필요	야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평점	등급
고용상 비차별	5개					100점	가
고용상 남녀 비차별	6개					100점	가
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	3개					100점	가
<b>평균 점수</b>	<b>14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100점</b>	<b>가</b>

○ 여자,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고, 성과급, 복지포인트 등 급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
 ○ 향후 급여 신설 시 차별적 요소 발생 가능성 검토할 수 있는 지표 필요

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(1개 항목, 4개 지표)

항 목	예	보완 필요	아-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평점	등급
결사, 단체교섭의 자유	4개					100점	가
<b>평균 점수</b>	<b>4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100점</b>	<b>가</b>
○ 현재 기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되어서 운영 중이며, 현재까지 단체교섭은 진행하지 않았음 ○ 노동조합,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통로로 소통하며 원활한 노사관계 구축 중							

④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(3개 항목, 12개 지표)

항 목	예	보완 필요	아-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평점	등급
강제노동 금지	5개					100점	가
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	6개					100점	가
연소자 고용 금지	3개					100점	가
<b>평균 점수</b>	<b>14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100점</b>	<b>가</b>
○ 기관에서는 강제노동, 연소자 고용을 하지 않음. 단, 강제노동은 퇴직, 근무 과정 등에서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모든 강제 조치를 포함하므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 검토 ○ 단, '협력회사에 의한 강제노동'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및 강제노동을 모니터링하는 절차에 있어 보완 필요							

⑤ 산업안전 보장(4개 항목, 19개 지표)

항 목	예	보완 필요	아-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평점	등급
작업장 안전	5개		1개			83점	나
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	4개	1개				90점	가
필수장비제공 및 교육실시 등	5개					100점	가
산업재해 피해자근로자 지원	3개					100점	가
<b>평균 점수</b>	<b>17개</b>	<b>1개</b>	<b>1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100점</b>	<b>가</b>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거 산업안전은 정도 준수되고 있으나,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 보완 필요 ○ 법령을 준수하여 임산부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으나,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 검토							

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(2개 항목, 5개 지표)

항 목	예	보완 필요	아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평점	등급
협력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			3개			0점	마
모니터링 실시		2개				50점	마
<b>평균 점수</b>	<b>0개</b>	<b>2개</b>	<b>3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20점</b>	<b>마</b>

○ 기관운영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인권경영에 있어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평가  
 ○ 협력회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협력사의 인권 영향 심각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함  
 ○ 계약, 구매 등에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계약 상대방의 인권성과 모니터링 필요

⑦ 정보 인권 보호(1개 항목, 5개 지표)

항 목	예	보완 필요	아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평점	등급
정보 인권 보호	4개	1개				90점	가
<b>평균 점수</b>	<b>4개</b>	<b>1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90점</b>	<b>가</b>

○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정보 인권 보호하고 있음  
 ○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기관이 직원에게 경영과 사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조치 필요

⑧ 직원 인권 보장(4개 항목, 13개 지표)

항 목	예	보완 필요	아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평점	등급
폭력예방	3개					100점	가
성폭력 예방과 구제 조치	4개					100점	가
일·가정 양립	2개					100점	가
휴식권	4개					100점	가
<b>평균 점수</b>	<b>13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100점</b>	<b>가</b>

○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며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절차 마련  
 ○ 성폭력성희롱 관련 컨설팅 및 지침 개정, 기관 홈페이지 내 신고채널 개설 등으로 관련 문제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  
 ○ 외부기관까지 소통 가능한 채널(홈페이지) 개설  
 ○ 휴식권 보장을 위해 개인메신저를 통한 업무 금지 실시

## □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

### ① 콘텐츠 제작 관리(4개 분야, 13개 지표)

항 목	예	보완 필요	야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평점	등급
외부인력에 대한 차별금지	3개	2개				80점	나
방송인권 보호	1개	1개				75점	가
재산권 보호	2개	2개				75점	나
사업고객 정보 보호	2개					100점	가
<b>평균 점수</b>	<b>8개</b>	<b>5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83점</b>	<b>가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부인력 채용 시 사용하는 별도 계약서를 개정하여, 차별 금지 관련 내용까지 포함</li> <li>○ 방송인권 보호에 대해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 필요</li> <li>○ 콘텐츠 제작 수행 인력 대상으로 저작권, 재산권 등 관련 교육 부재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필요</li> <li>○ 제작 또는 콘텐츠 관리 시 사업수행 인력의 저작권, 소유권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절차 필요</li> </ul>							

### ② 방송심의(2개 항목, 6개 지표)

항 목	예	보완 필요	야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평점	등급
프로그램 모니터링 체계	2개	1개				83점	가
민원인 인권 존중	2개	1개				83점	가
<b>평균 점수</b>	<b>4개</b>	<b>2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0개</b>	<b>83점</b>	<b>가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송심을 주관하는 심의감사부 뿐만 아니라 지역국(대전, 광주)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</li> <li>○ 특히 민원인에 대한 콜백 및 공백 없이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</li> <li>○ 타 기관 벤치마킹으로 인권 관련 지표 고도화 실시</li> </ul>							

## VI

## 인권영향평가 전문위원 평가

### □ 위원별 전문분야 선정

- (평가위원)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윤리인권경영위원 중 외부위원으로만 구성

NO	평가 분야	항목수	지표수	평가위원
1	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5개	23개	정○○

2	고용상의 비차별	3개	14개	최○○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1개	4개	
4	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의 금지	3개	12개	
5	산업안전 보장	4개	19개	정○○
6	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	2개	5개	
7	정보 인권 보호	1개	5개	
8	직원 인권 보장	4개	13개	장○○
9	콘텐츠 제작 관리	4개	13개	
10	방송심의	1개	6개	

## □ 위원별 평가 의견

### ○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지표	평가결과(보완사항)
1.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-6 보완필요로 평가하였는데 우리 인권헌장 자체가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준거로 하여 만들어졌으며, 우리의 인권영향평가의 준거가 되는 인권위 인권경영매뉴얼도 동일한 기반하에서 작성되었으므로, 그에 근거한 인권영향평가도 “예”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. 추후 재확인이 필요</li> <li>○ 1-9는 어떤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 요구</li> <li>○ 1-12 협력사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제도화 과정이 필요</li> <li>○ 1-20 이하 구제절차는 구제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검토 필요</li> </ul>
2. 고용상의 차별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채용과정, 성별,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권익보호에 충실한 것으로 사료됨.</li> <li>○ 다만 노사협의회 고충처리민원, 징계위 심의 사건, 노동부 등 외부 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가 1건이라도 있다면 질적인 사례 평가를 하여 반영함이 좋겠음</li> </ul>
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운영 등이 원만한 것으로 보임</li> </ul>
4.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력사 및 연소자 관련 인권침해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</li> <li>○ 협력업체 또는 협력 개인들의 반인권 행적이나 작품활동을 체크하여 데이터화하여 협력관계 맺을 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</li> </ul>
5. 산업안전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반적으로 안전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보임</li> <li>○ 코로나 방역을 신규지표로 설정한 것을 바람직함</li> <li>○ 장애인의무고용비율 준수 관련 고용 장애인들의 실제 만족도 등을 확인 필요</li> </ul>

6.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○ 6-1~5 협력사에 관한 부분인데 기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추가로 인권 부분을 삽입하여 제출받는 방법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음
7. 정보 인권 보호	○ 7-5는 문항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
8. 직원 인권 보장	○ 8-5에서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는 지표에 대해 “예”라고 되어 있는데 1-20이하 구제절차 지표에서는 총 6개 지표 중 과반수가 넘는 4개가 보완필요로 평가되어 있는데, 이는 재검토가 필요

○ 사업운영 인권영향평가

지표	평가결과(보완사항)
1. 콘텐츠 제작 관리	○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계약 시 방송작가 집필계약과 같이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면 좋겠음 ○ 방송인권 보호에 대해 구체화 할 수 있는 매뉴얼 필요
2. 방송심의	○ 인권 관련 지표 보완 필요

**VII**

**행정사항**

제1회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

- 인권영향평가 전체 평가 공유 및 결과보고 심의, 의결
  - 개선방안 도출, 구제절차 수립 등 후속 조치 진행
  - 2022년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에 해당 내용 반영
-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진행
  - 참가자 전원 화상회의 시스템 사용

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공개

- 기관 홈페이지, 경영공시 시스템(알리오) 등에 인권영향평가 결과공개

**별첨 1.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1부**

**2.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표 1부. 끝.**